

내부회계관리제도 뉴스레터

Nov 27, 2018

In this Issue

- I. 뉴스기사
- II. 법제도 동향
- III. 삼정 KPMG K-SOX
- IV. Global KPMG
- V. Q&A
- VI. 이벤트

Key Contacts

삼정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T 는 회계제도의 변혁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TFT 는 K-SOX(*) Newsletter 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뉴스기사, 법제도 동향, 전문가 보고서, Q&A 등을 제공하고,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추진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K-SOX: Korea Sarbanes-Oxley Act의 약자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의미한다.

I. 뉴스기사

국내 동향

- 기업 74% "새 내부회계관리제도, 내부 프로세스 투명하게 만들 것" [뉴시스]
- '내부회계관리제도'도 감사 대상, 기업들 비상등 [더벨]
-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코스닥 기업에 내부공시·회계관리 지원" [이데일리]
- 금융기관 내부통제 이사회 책임 명문화...우수기관은 인센티브 [뉴시스]
- 여신·지배구조·국제·IB...금감원, 은행 검사역 '전공' 살린다 [아시아경제]
- 금융당국,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한다...준법감시인 조직 의무화 [머니투데이]
- [新외감법] 감사 안정성 높이고, 책임 강화했다 [조세금융신문]

해외 동향

- Study links accounting expertise to misstatement risk [CW]
- Adverse audit opinions on ICFR taper off in 2017 [CW]

[Back to top](#)

II. 법제도 동향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2차 개정

• 주요내용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2005년 6월 제정되었으며, 모범규준 적용해설서 및 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가 각각 2005년 12월 및 2007년 6월 제정됨. 2012년 12월 모범규준 등의 1차 개정 이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둘러싸고 국내외 환경에 여러가지 변화가 발생함
- 2013년 5월 COSO(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가 국내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및 적용해설서의 준거기준으로 사용한 '내부통제 통합 개념체계(Internal Control-Integrated Framework)'를 전면

개정 발표하고, 국내외 경우 2017년 10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 인증 수준이 '검토'에서 '감사'수준으로 강화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강조됨

- 주요 개정 내용으로, '원칙기반 접근법(Principles-Based Approach)'의 적용을 위하여 17가지 내부통제의 원칙을 제시하고 각 원칙별로 갖추어야 하는 요구사항을 명확화하였음
- 또한, 모범규준 등의 구성체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음
(클릭하여 다운로드 가능)

[설계 및 운영]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 (원칙적 적용)
(참고지침 1)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기법](#) (자율적 지침)
(참고지침 2)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사례* (자율적 지침)

[평가 및 보고]

-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 (원칙적 적용)
(참고지침)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적용기법](#) (자율적 지침)

(*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적용사례는 2019년 상반기 발표 예정)

-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발표일(2018. 6. 28)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주권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주권비상장법인은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할 수 있음

[Back to top](#)

III. 삼정KPMG K-SOX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평가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전부개정 외부감사법이 2017년 10월 31일 공포되고,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직접 주주총회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도 검토(review)에서 감사(audit)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과 평가 관련 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출처] 삼정KPMG ACI, 감사위원회 저널

국내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현황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에 따른 검토에서 감사로의 인증수준 상향, 감독당국의 점검 강화 등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법제도적·전사회적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현황을 알아보고,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출처] 삼정KPMG ACI, 감사위원회 저널

[Back to top](#)

IV. Global KPMG

2017 Internal Controls Survey



미국은 2002년 SOX법(Sarbanes-Oxley Act)을 통해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유사한 재무보고내부통제(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가 도입된지 1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재무보고내부통제가 시작된지 15년 되는 시점인 2017년, US KPMG가 재무보고내부통제 담당자 114명에 대하여 실시한 내부통제 관련 설문조사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은 도입 시점부터 재무보고내부통제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이 감사를 실시해왔습니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으로 국내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 수준이 감사로 상향되는 시점에서, 본 보고서는 국내 기업에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출처] Global KPMG

[Back to top](#)

V. Q&A

대표자가 아닌 내부회계관리자가 이사회 및 감사에 관한 보고를 하는 사유

Q1. 대표자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대신하여 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의 대표자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경우 이것이 사유가 될지 궁금합니다.

A1. 대표자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보고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 적법한 사유로 인정될 것인지에 대해 현재까지 명확한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도 대표자의 주총 보고행위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외감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행위는 다양한 실무적인 이유로 대표자가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질의하신 상황의 경우 '대표자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므로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이 형식적으로 흠결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감사(위원회)의 경우 '보다 상세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실무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대표이사보다는 내부회계관리자가 보고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상의 내용이 감독당국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이 아니라는 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업무 수행 조직이 통제미비사항을 직접 개선하는 행위의 적절성

Q2. 내부회계전담부서가 신설된 경우, 해당 부서에서 회사의 통제미비사항을 직접 개선하는 행위가(예를 들면 전산시스템 수정 등) '독립성 위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2. 내부회계전담부서에서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내부회계전담부서는 궁극적으로 회사의 통제활동에 대한 평가책임을 갖는 조직으로서 통제활동의 운영, 미비점의 개선은 해당 통제활동을 수행하는 현업부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내부회계전담부서가 통제미비사항을 직접 개선, 재설계하는 경우 향후 자신이 수행할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내부회계전담부서는 평가결과를 안내하고, 권고하는 수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실제 통제활동의 재설계, 구축 및 운영은 현업부서의 책임하에 수행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한국상장사협의회 실무상담Q&A

[Back to top](#)

VI. 이벤트

『감사위원회 포럼 창립식 및 세미나』

(사)감사위원회 포럼은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4대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이 사회공헌의 뜻을 모아 설립한 비영리단체입니다.

(사)감사위원회 포럼에서는 아래와 같이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2018년 11월 29일(목) 10:00~14:00
- 장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 119 더 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 (22F)
- 내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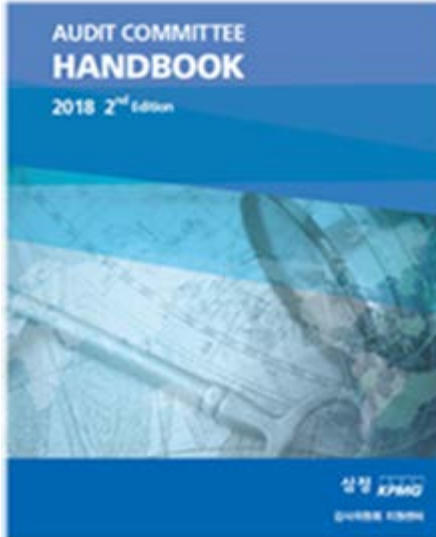
Time	Agenda	Speaker
09:30~10:00	참가자 등록	
10:00~10:10	축사 I - 금융위원장	
10:10~10:20	축사 II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10:20~10:50	감사위원회 포럼 오리엔테이션	감사위원회 포럼 김준철 대표 (안진 회계법인)
10:50~11:00	Coffee / Tea Break	
11:00~11:40	Session I : 회계개혁의 의의	금융위원회 손영채 과장

11:40~12:20	Session II : 새로운 외부감사법 환경 하에서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감사위원회 포럼 김유경 이사 (삼정 회계법인)
12:20~14:00	오찬	

- 주 최: (사단법인) 감사위원회 포럼

『감사위원회 핸드북<Audit Committee Handbook>』 개정판 발간

- 삼정KPMG(대표이사 김교태)는 감사위원회 실무지침서로는 최초로 발간되어, 감사위원과 감사에게 이론 및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온 『감사위원회 핸드북<Audit Committee Handbook>』의 『개정판<2018 2nd Edition>』을 11월 19일에 발간함



- 『감사위원회 핸드북』은 법제도적 측면뿐 아니라 감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집대성하였으며, 특히 오랜 기간 전세계 감사위원회와의 교류를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망라한 글로벌 KPMG ACI의 핸드북 등을 참고하여 구성함
- 이번 개정판에서는 개정된 외부감사법 등 법제도 환경의 변화가 감사위원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강조하였고 프로세스, 템플릿, 체크리스트 등 실무에 도움이 될 내용과 감사위원회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례 및 통계자료를 강화하였으며, 독자가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법규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법규 모음집'을 별도 제공
- 시중에 판매되진 않으며, 국내 주요 기업의 감사위원·감사·사외이사 등에 제공될 예정

『감사위원과 감사를 위한 Audit Committee Handbook 교육 프로그램 : Auditor Program』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는 그간 네 번에 걸쳐 국내 우수 기업의 감사위원과 감사님들을 모시고, Audit Committee Handbook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격려와 관심에 힘입어 다가오는 12월, 제5회 ACI Auditor Program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일 시: 2018년 12월 17일(월) 10:20~15:05
- 장 소: 삼정KPMG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비전 Training Room
- 내 용

Time	Agenda	Speaker
------	--------	---------

09:50~10:20	참가자 등록	
10:20~10:25	Opening Remarks – 김교태 CEO(삼정 KPMG)	
10:25~10:40	참가자 소개 – 사회자 (엄수진 책임연구원)	
10:40~11:20	Session I – 기업지배구조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정립을 위한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의미와 역할 정립	김유경 상무 ACI Leader (삼정 KPMG)
11:20~12:00	Session II – 감사위원회 제도 법에서 요구되는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역할, 권한 및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다양한 법적 제재 사례 소개	TBD (삼정 KPMG)
12:00~13:30	기념 촬영 및 오찬	
13:30~13:55	Session III –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와 감사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적 요령(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기준 소개 포함) 및 해외 선진 사례 소개	강환우 수석연구원 (삼정 KPMG)
13:55~14:05	Coffee / Tea Break	
14:05~15:00	Session IV – 감사위원회 활동방안 개정 외감법과 감사위원회 역할 / 감사위원회와 감사가 실제 수행해야 할 주요 활동영역에 대한 실무사례	김유경 상무 ACI Leader (삼정 KPMG)
15:00~15:05	Closing Remarks – 신경섭 감사부문 대표(삼정 KPMG)	

『2018 하반기 상장사 재무제표 작성능력 제고를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

• 일 시

- 1 차: 2018 년 11 월 26 일 (월) 14:00~17:00
- 2 차: 2018 년 11 월 29 일 (목) 14:00~17:00

• 장 소

- 1 차: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여의도)
- 2 차: KTX 대전역 5 층 인경실

• 주제 및 강사:

시간	발표 내용	강사(예정)
14:00~14:30	2019 시행 K-IFRS 주요 제·개정 내용	최현덕 수석연구원
14:30~15:20	2019 시행 K-IFRS 제1116호(리스) 주요 내용	양정아 수석연구원
15:20~15:30	휴식(10분)	
15:30~16:15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실무 이슈	권용우 책임연구원
16:15~17:00	K-IFRS 제1115호(수익) 실무 이슈	이춘호 책임연구원

- 주 최: 코스닥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Back to top](#)

Key Contacts



신경섭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양승열 부대표

K-SOX TFT Leader

- 김진태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 김하균 전무 건설업, 공기업, 교육 및 의료 산업 부문 담당
- 변재준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 이주한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 전용기 전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 전철희 전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 채민선 전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 허세봉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 김유경 상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담당
- 이성노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 이종우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 한기원 상무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 한상현 전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담당
- 황구철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Back to top](#)

[Privacy](#) | [Legal](#)

kpmg.com/socialmedia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kpmg.com/app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18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